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

장관님 모두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개정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 다음 주면 노조법 2·3조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들, 지방고용노동청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같이 하실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목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노동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사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낡은 관행을 탈피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자 했냐는 것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노동자들은 극한 투쟁을 하고
다시 사용자는 불법 투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이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 청구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 파업의 근원을 없애고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정치가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하청이 상생할 때 K자 성장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조법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노사관계 당사자들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 등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여전히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자 측은 교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 교섭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도, 제도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정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자산을 회복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매뉴얼도 만들었고 해석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설명도 많이 했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재입법 예고 기간까지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본부가 여러 차례 숙의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나.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대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